

#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채택과 향후 대응방향

2023.07.



2023년 7월 14일자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 USD(달러) = 1,267원

# [ 목 차 ]

<b>I. 도입 배경</b> .....	<b>4</b>
1. 입법 배경 및 추진경과 .....	4
<b>II. 주요 내용</b> .....	<b>9</b>
1. 적용품목 및 수출입현황 .....	9
2. EUDR 규정 분석 .....	26
3. 해외 주요국 EUDR 대응 사례 .....	35
<b>III. 시사점</b> .....	<b>37</b>
1. 한국산 수출 영향 .....	37
2. 한국산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	41

#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채택과 향후 대응방향

## 1. 도입 배경

- 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법률 및 규정을 꾸준히 제정
  - \* 「EU 목재 규정(2013)」 및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FLEGT)(2003)」은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EUDR)」 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
- (2023.06.29.) EUDR 규정 발효 → (2024.12.30.) 공급망 참여 주체별 의무 시행 및 국가별 위험 수준 결정 → (2025.06.) 중소기업 대상으로 의무 시행 확대 및 규제 품목 확대 검토

## 2. 주요 내용

- 소 · 코코아 · 커피 · 팜유 · 고무 · 대두 · 목재 및 파생제품 규제
- 규제 품목 및 제품은 산림 전용 금지 요건 이행 및 증명
  - \* 산림 전용 금지 및 생산국 관련 규정 준수, 실사 선언서 제공 필수
- 유럽연합에 소재한 ‘운영자’ 는 실사 수행 필수
  - \* EU 시장에 규제 제품을 출시하는 ‘운영자’에 해당 제품 준수 여부 입증 및 실사 의무 발생
  - \* 실사는 ▲특정 정보나 데이터, 문서 수집·보관 ▲위험 평가 ▲위험 완화 조치 수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운영자’는 실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책임
- ‘거래자’ 는 제품 관련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 및 보관
  - \* ‘운영자’ 외 공급망에 참여하는 주체를 ‘거래자’로 규정, 제품을 공급해줬거나 공급할 거래인 정보를 최소 5년간 보관

## 3. 시사점

- EUDR 규정 시행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對EU 수출 타격은 적을 것
- 하지만, 규제 모니터링 및 ESG 전략 수립 필요
  - \* 글로벌 무역환경의 ESG 이행 요구 및 EUDR 규정의 간접적 영향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ESG 경영체계 확립 및 친환경 생산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시점

# I.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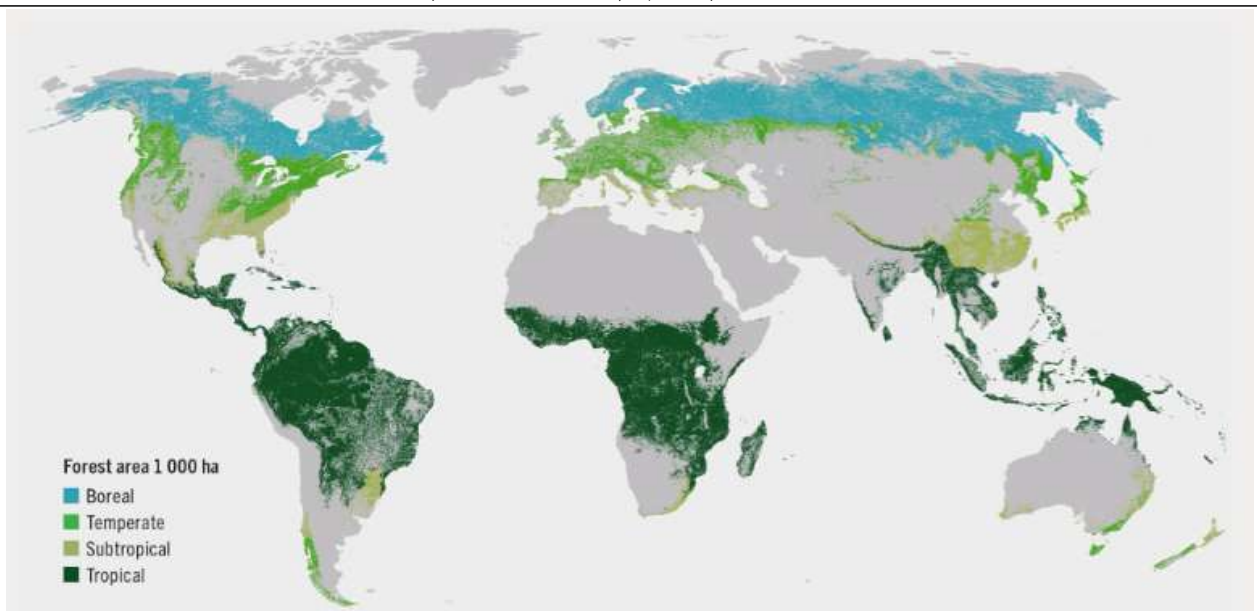
## 1. 입법 배경 및 추진경과

### 가. 입법 배경

□ 빠른 속도로 산림 면적이 축소되며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제기

- 산림 전용 확대에 의한 산림 면적 축소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제 발생
  - 전 세계 육지 표면의 31%(약 40억 6,000만 ha, 2020년 기준)에 달하는 산림은 생물다양성을 책임지며 6,620억 톤의 탄소를 함유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큰 역할

<그림 1-1> 전 세계 산림 분포(2020)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 하지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4억 2,000만 ha에 달하는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환(‘전용’)되었으며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000만 ha가 전용된 것으로 추정
- 산림 용도를 전환함으로써 생물다양성 감소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력성

감소 및 가속화, 물 부족 및 식량 생산량 감소 등의 심각한 전 지구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유럽연합(EU)은 입법을 통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노력 지속

- 2019년 유럽연합은 산림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sup>1)</sup>
  - 당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림 손실을 중단하고 「2013년 EU 산림 전략」과 「202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 및 2050년까지 기후 중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우선순위를 설정

<표 1-1>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한 우선순위

구분		세부 내용
1	우선순위	육지에서 EU 소비 발자국을 줄이고 산림 전용이 없는 공급망의 제품 소비를 장려
	주요 조치	- 다중 이해관계자 및 회원국 대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교류 촉진 - 산림 전용 방지 제품 식별 및 촉진을 위한 표준 및 인증 체계 강화 장려 - 공급망 투명성 제고와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위험을 내포한 상품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 측면 규제 및 비규제 조치 평가
2	우선순위	산림 압박을 줄이고 산림 전용 방지 개발 협력을 위해 생산국과 협력
	주요 조치	파트너국의 산림 관리에 관한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 및 구현 지원
3	우선순위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산림 복원 장려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주요 조치	- 주요 국제기구의 산림 복원 정책 및 조치 협력 강화 - 산림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 촉진
4	우선순위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관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부문 재조정
	주요 조치	- 녹색 금융 촉진을 위한 자금 활용 및 확대 - 기업 활동이 산림 전용 및 황폐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 개선
5	우선순위	산림 및 관련 상품 공급망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품질, 가용성 개선
	주요 조치	-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세계 산림 피복 변화 등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소 구축 - 기존 글로벌 또는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연구기관 간 작업 개선 및 역량 강화 -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바이오 경제, 재생에너지, 스마트 농업 및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EU 관행을 타 국가와 공유

\*출처: EU Communication (2019) on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

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mpty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

- 2023년 6월 29일, 유럽연합은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시장 공급 및 수출에 관한 규정 ((EU) 2023/1115)<sup>2)</sup>」을 발효
  - 본 규정(「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EUDR)」)은 유럽 소비자가 구매, 사용 및 소비하는 제품이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림 전용(Deforestation) 및 산림 황폐화(Forest Degradation)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의 소비 및 생산으로 인한 연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200만 미터톤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
  - 본 규정에서는 ‘산림(forest)’을 ‘5m 이상의 나무와 10% 이상의 피복이 있는 0.5ha 이상 면적의 토지 또는 농업용이나 도시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나무’로 정의
  - ‘산림 전용’은 인간의 유발(human-induced)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산림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음
-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EU 목재 규정(EUTR)<sup>3)</sup>」 및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FLEGT)<sup>4)</sup>」을 제정
  -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EU 목재 규정」은 불법 벌채·벌목된 목재 및 관련 제품의 거래를 막고자 해당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운영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생산품 및 수입품 모두에 적용됨<sup>5)</sup>
    - 특히 불법 벌채·벌목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고 무역업체가 공급자 및 고객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함
    - 「EU 목재 규정」은 2023년 6월 29일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 발효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실사 및 정보 기록·보관 요구사항이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에도 반영
  - 2003년 공포된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FLEGT)」은 불법 벌목 및 거래 근절을 위한 ▲중앙 아프리카, 열대 남미 및 동아시아 등 주요 목재 생산국과의 협력 ▲불법 벌목 목재 수입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실사 수행 ▲EU 내 불법 생산 목재 수요 감소 등 실행계획을 포함

2)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3) EU Timber Regulation

4)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5) 유럽연합 집행위(<https://environment.ec.europa.eu>)

- EUDR 규정은 산림 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전 세계 최초 법안
  - 「EU 목재 규정」 및 「산림법 집행·거버넌스·무역 행동」은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실사 시스템 구축 및 수행 ▲정보 수집 및 기록 보관과 같은 주요 내용이 새 규정에 반영됨
  - 하지만 EUDR 규정은 두 규정이 불법 벌채에 의한 산림 전용에 초점을 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 품목을 목재 외에도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으로 보다 확대되었으며, 원산지 및 토지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에서 위도 및 경도가 포함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나.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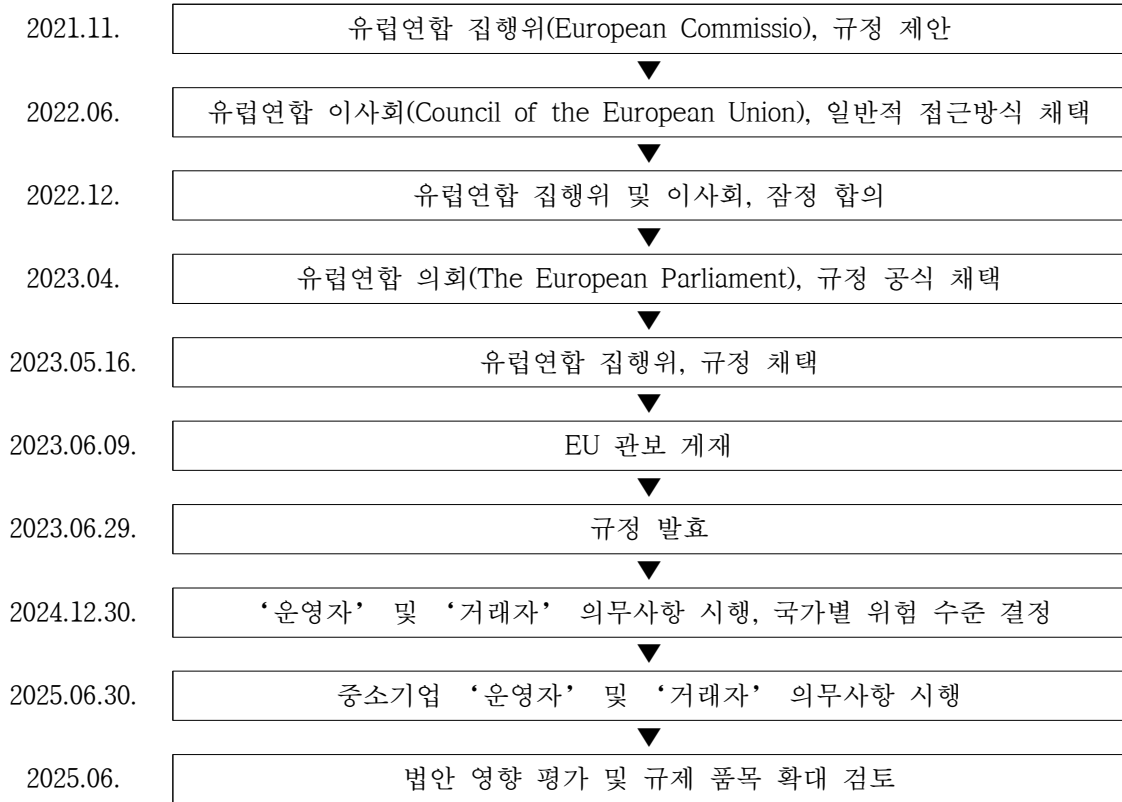
□ 2021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가 규정을 제안한 이래,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 채택하기에 이룸

- 유럽연합 집행위, 규정 초안 제안(2021.11.)
- 규정 채택(2023.05.) 및 유럽연합 관보 게재(2023.06.09.)
- 관보 게재 후 20일이 지나 발효(2023.06.29.)

□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 시행 및 규정 구체화 예정

- 공급망 참여 주체(‘운영자’ 및 ‘거래자’) 대상 의무 시행 및 국가별 위험 수준 결정(2024.12.30.)
  - 발효 후 18개월 간 전환기간 부여
- 중소기업 ‘운영자’ 및 ‘거래자’ 대상 의무 시행(2025.06.30.)
  - 발효 후 24개월 간 전환기간 부여
- 법안 영향 평가 및 규제 품목 확대 검토(2025.06.)

〈그림 1-2〉 EU 산립 전용 방지 규정 추진단계





## II. 주요 내용

### 1. 적용품목 및 수출입현황

#### 가. EUDR 적용품목

#### □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7개 품목과 파생 제품에 규제 적용

- EUDR 규정은 전 세계 산림 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선정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
  - 본 규정에서 말하는 ‘산림 전용 방지(deforestation-free)’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산림 전용 대상이 아닌 토지에서 생산한 규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
    - 특히 목재 및 목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산림 황폐화 (forest degradation)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연구<sup>6)</sup>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8년 사이 산림을 전용하여 생산된 농작물의 36% 및 축산물의 25%가 유럽연합으로 수입됨
    - 특히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산림 전용 농작물 중 EU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할 경우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규정은 특정 7개 품목을 포함 · 공급 · 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
  - 특정 7개 품목(‘규제 품목’)으로 ▲소(cattle) ▲코코아(cocoa) ▲커피(coffee) ▲팜유(oil palm) ▲고무(rubber) ▲대두(soya) ▲목재(wood) 지정
    - EU가 2021년 수입한 냉동 쇠고기의 54% 가량이 아마존 산림 전용을 통해 쇠고기를 생산하는 브라질산으로 나타남<sup>7)</sup>
    -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이 수입한 코코아 열매의 44% 및 코코아 페이스트의 54%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입되었는데,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6)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2013), European Parliament

7) 브라질 토지 피복 데이터 이니셔티브(<https://brasil.mapbiomas.org>)

산림은 산림 파괴와 불법 목재 거래, 아동 노동 등에 연루<sup>8)</sup>

- 마찬가지로, 2021년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커피의 11%가 산림 전용 및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된 베트남산이며, 광범위한 산림 전용과 원주민 동의 없는 토지 점유 등에 의해 생산된 말레이시아 제재목 수출의 약 10%가 유럽연합으로 수입됨<sup>9)</sup>
- 이들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sup>10)</sup>하거나 공급<sup>11)</sup>하는 행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역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
- 2023년 6월 29일 규정 발효와 동시에 위 품목에 곧바로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미적용
- 단, (EU) No 995/2010<sup>12)</sup> 2조 (a)항에 정의된 목재 및 목재 제품(timber and timber products)<sup>13)</sup> 중 2023년 6월 29일 이전에 생산되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특정 조건(①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아야 하며 ②생산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③실사 선언서의 적용을 받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 출시나 공급, 또는 수출할 수 없음
- 향후 약 2년간 추가적인 검토 실시 후 규제 품목 확대 예정
- 규정 초안에는 고무를 제외한 6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나 추후 고무가 추가되었으며, 유럽연합 의회에서 제안한 돼지(swine), 양(sheep), 염소(goats), 가금류(poultry), 옥수수(maize)는 최종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
- 하지만 위 5개 품목의 산림 전용 우려가 제기된 만큼 향후 규제 대상 확대될 가능성 높음

8) Study says unregulated cocoa production behind deforestation in Côte d'Ivoire, RFI(2023.04.10.)

9) 보르네오 프로젝트(<https://borneoproject.org>)

10)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EU 시장에서 7개 품목 및 이들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을 처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11) 시장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대가를 받고 또는 무료로 EU 시장에서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유통, 소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것

12)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13) HS Code 4401, 4403,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00-00, 4414.00, 4415, 4416.00-00, 4418, 9403.30, 9403.40, 9403.50-00, 9403.60, 9604.90-30, 9406.00-20, 47류 및 48류

〈표 II-1〉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적용품목 및 관련 제품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1	<p>소(cattle)</p> <p>살아있는 소</p> <p>신선·냉장 쇠고기<sup>1)</sup></p> <p>냉동 쇠고기<sup>1)</sup></p> <p>소의 식용 내장(신선·냉장)<sup>1)</sup></p> <p>소의 간(냉동)<sup>1)</sup></p> <p>소의 기타 내장(냉동, 혀 및 간 제외)<sup>1)</sup></p> <p>기타 조제·보존처리한 소의 육·내장·피<sup>1)</sup></p> <p>소의 원피(신선·염장·건조·석회처리·산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처리한 것은 제외, 털 제거 또는 스플릿 여부에 상관없음)<sup>1)</sup></p> <p>소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sup>1)</sup></p> <p>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 가공한 소의 가죽(파치먼트 가공 가죽 포함, 털을 제거한 것에 한하며 스플릿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114호 가죽 제외)<sup>1)</sup></p>	<p>0102.21(번식용), 0102.29(기타)</p> <p>0201</p> <p>0202</p> <p>0206.10</p> <p>0206.22</p> <p>0206.29</p> <p>1602.50</p> <p>4101</p> <p>4104</p> <p>4107</p>
2	<p>코코아(cocoa)</p> <p>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에 한함)</p> <p>코코아의 껍데기·껍질·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p> <p>코코아 페이스트(탈지 여부에 상관없음)</p> <p>코코아 버터·유지류</p> <p>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제외)</p> <p>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p>	<p>1801</p> <p>1802</p> <p>1803</p> <p>1804</p> <p>1805</p> <p>1806</p>
3	<p>커피(coffee)</p> <p>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음)·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에 상관없음)</p>	<p>0901</p>
4	<p>팜유(oil palm)</p> <p>팜너트와 핵</p> <p>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p> <p>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의 조유(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p> <p>그 밖의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조유 제외)</p> <p>팜너트나 핵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모양인지 여부에 상관없으며, 2304호나 2305호의 것 제외, 식물성·미생물성 유지류를 추출할 때 생기는 것에 한함)</p> <p>순도 95% 이상의 글리세롤(건중량 기준)<sup>1)</sup></p> <p>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p> <p>기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p> <p>공업용 스테아린산</p> <p>공업용 올레인산</p> <p>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p> <p>공업용 지방성 알코올</p>	<p>1207.10</p> <p>1511</p> <p>1513.21</p> <p>1513.29</p> <p>2306.60</p> <p>2905.45</p> <p>2915.70</p> <p>2915.90</p> <p>3823.11</p> <p>3823.12</p> <p>3823.19</p> <p>3823.70</p>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5	천연고무·발라타·구타페르카·구아울·치클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모양에 한함)	4001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판·시트·스트립 모양에 한함) <sup>1)</sup>	4005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판·형재)과 제품(예. 디스크·링) <sup>1)</sup>	4006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에 한정) <sup>1)</sup>	4007
	고무로 만든 판·시트·스트립·막대·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 고무인 것은 제외) <sup>1)</sup>	4008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용 벨트와 벨팅(가황한 것에 한함) <sup>1)</sup>	401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함) <sup>1)</sup>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에 한함), 고무로 만든 솔리드나 쿠션타이어, 타이어트레드, 타이어 플랩 <sup>1)</sup>	4012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sup>1)</sup>	4013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병어리장갑 포함, 경질 고무 외의 가황한 것에 한함, 용도 무관) <sup>1)</sup>	4015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고무로 만든 것 제외) <sup>1)</sup>	4016
각종 모양의 경질 고무(예. 에보나이트,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포함)와 경질고무의 제품 <sup>1)</sup>	4017	
6	대두(부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음)	1201
	채유에 적합한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1208.1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507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백(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모양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2304
7	땃나무(통나무·빌렛·잔가지·다발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함), 칩 또는 파티클 형태의 목재,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켓·펠릿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음)	4401
	목탄(셀이나 너트의 탄 포함, 응결 여부에 상관없음)	4402
	원목(수피·변재를 벗겨낸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03
	후프우드,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 제외), 목재의 막대(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 선반가공·휩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한 것 제외), 칩우드와 이와 유사한 것	4404
	목모와 목분	4405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
	제재목(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07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7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한 것 포함),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08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 포함)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09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목재나 그 밖의 목질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10
	섬유판(재나 그 밖의 목질 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411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 모양·스트립 모양·프로파일 모양인 것에 한정)	4413
	목재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
	목재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목재로 만든 케이블드럼, 목재로 만든 펠릿, 박스펠릿, 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펠릿칼러	4415
	목재로 만든 통·배럴·베트·텝·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 포함)	4416
	목재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목재로 만든 신발의 골	4417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 포함)	4418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19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목재로 만든 상자와 용기, 목재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대항하지 않은 목제 가구	4420
	그 밖의 목제품	4421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도면 <sup>1)</sup>	49류
의자와 그 부분품 <sup>1)</sup>	9401	
목제 가구 및 그 부분품	9403.03, 9403.40, 9403.50, 9403.60, 9403.91	
나무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	9406.10	

1) 규정에 명시된 예시 제품

\*주: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품목명 작성방법 참조

\*출처: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2023/1115)

## 나. 품목별 수입현황

### □ 소 및 관련 제품은 EU 역내 거래 비중이 큰 편

- (번식용 살아있는 소) 약 3억 7,813만 달러(한화 약 4,790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4% 증가(HS 0102.21)
  - 프랑스(40.5%), 독일(17.5%), 벨기에(7.2%) 등 역내국 수입 비중이 크며,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기타 살아있는 소) 약 29억 8,812만 달러(한화 약 3조 7,85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20.1% 증가(HS 0102.29)
  - 프랑스(55.8%), 독일(6.3%), 체코(5.4%) 등 역내국 중심으로 수입되며,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신선·냉장 쇠고기) 약 119억 6,289만 달러(한화 약 15조 1,56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2.8% 증가(HS 0201)<sup>14)</sup>
  - 신선·냉장 쇠고기(HS 0201) 수입은 네덜란드(19.7%), 폴란드(10.9%), 독일(9.7%) 등 역내 거래가 주로 이뤄지며,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신선·냉장 쇠고기 하위 품목인 ▲신선·냉장 쇠고기 도체(HS 0201.10) ▲신선·냉장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HS 0201.20) ▲신선·냉장 뼈 없는 쇠고기(HS 0201.30)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음
- (냉동 쇠고기) 약 28억 8,462만 달러(한화 약 3조 6,548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29.2% 증가(HS 0202)<sup>15)</sup>
  - EU의 냉동 쇠고기(HS 0202) 주요 수입국은 폴란드(13.8%), 네덜란드(13.7%), 독일(12.1%) 등으로 역내국 거래 중심
  - 2022년 약 1억 8,796만 달러(한화 약 2,381억 원) 수입된 냉동 쇠고기의 도체(HS 0202.10)는 네덜란드(24.3%), 독일(23.5%), 폴란드(18.0%) 등 역내국 거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 한국산이 7,000달러(한화 약 886만 원) 수입된 바 있음
  - 냉동 기타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HS 0202.20) 또한 2019년과 2020년 한국산이 각각 2,000달러(한화 약 253만 원), 1,000달러(한화 약 126만 원) 수입됨

14) 신선·냉장 쇠고기의 도체(HS 0201.10), 신선·냉장 기타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HS 0201.20), 신선·냉장 뼈 없는 쇠고기(HS 0201.30) 포함

15) 냉동 쇠고기 도체(HS 0202.10), 냉동 기타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HS 0202.20), 냉동 뼈 없는 쇠고기(HS 0202.30) 포함

- (소의 신선·냉장 식용 내장) 약 2,741만 달러(한화 약 347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5.2% 증가(HS 0206.10)
  - 타 품목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46.1%), 독일(25.6%), 프랑스(4.6%) 등 EU 회원국 간 수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소의 냉동 간) 약 2억 4,538만 달러(한화 약 3,108만 원) 수입('22), 전년 대비 9.2% 증가(HS 0206.22)
  - 네덜란드(27.5%), 독일(15.6%) 등 EU 회원국과 과거 회원국이었던 영국(11.2%)이 주요 수입국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기타 조제·보존처리한 소의 육·내장·피) 약 8억 8,621만 달러(한화 약 1조 1,228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8.0% 증가(HS 1602.50)
  - 폴란드(15.2%) 및 독일(13.4%), 브라질(10.6%)에서 주로 수입되었으며, 2022년 한국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2만 4,000달러(한화 약 3,040만 원) 수입됨
- 유럽연합 외 제3국산 소 및 관련 제품은 승인된 국가에서만 수입 가능하므로 규정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

〈표 II-2〉 EU 소 및 관련 제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살아있는 소(번식용) (0102.21)	전 세계	395,097	313,884	362,787	373,007	378,131	100.0	1.4	-1.1	
	프랑스	167,990	129,742	139,878	134,906	153,293	40.5	13.6	-2.3	
	독일	67,429	52,804	82,582	75,372	66,321	17.5	-12.0	-0.4	
	벨기에	47,416	27,111	25,401	24,096	27,171	7.2	12.8	-13.0	
	대한민국	-	-	-	-	-	-	-	-	
살아있는 소(기타) (0102.29)	전 세계	2,484,149	1,989,057	2,200,046	2,488,809	2,988,116	100.0	20.1	4.7	
	프랑스	1,419,871	933,546	1,127,970	1,217,647	1,665,895	55.8	36.8	4.1	
	독일	122,401	148,507	180,531	182,623	188,696	6.3	3.3	11.4	
	체코	138,310	124,283	121,651	158,329	162,578	5.4	2.7	4.1	
	대한민국	-	-	-	-	-	-	-	-	
신선·냉장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신선·냉장 쇠고기(0201)									
	전 세계	10,659,357	10,091,459	9,152,875	10,607,700	11,962,890	100.0	12.8	2.9	
	네덜란드	2,122,440	2,023,953	1,877,942	2,222,535	2,351,378	19.7	5.8	2.6	
	폴란드	971,036	973,870	966,026	1,111,203	1,306,891	10.9	17.6	7.7	
	독일	1,118,215	1,050,814	925,763	1,060,765	1,163,173	9.7	9.7	1.0	
	대한민국	-	-	-	-	-	-	-	-	
	신선·냉장 쇠고기의 도체(carass)(0201.10)									
	전 세계	1,675,744	1,595,647	1,556,797	1,689,705	1,903,135	100.0	12.6	3.2	
	스페인	280,819	267,405	264,223	311,348	416,573	21.9	33.8	10.4	
	네덜란드	245,942	237,824	245,486	254,622	236,431	12.4	-7.1	-1.0	
	폴란드	207,452	202,547	200,928	190,431	207,643	10.9	9.0	0.0	
대한민국	-	-	-	-	-	-	-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신선·냉장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신선·냉장 기타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0201.20)									
	전 세계	3,024,424	2,828,311	2,587,102	3,072,287	3,424,856	100.0	11.5	3.2	
	네덜란드	548,913	516,869	473,535	574,750	609,647	17.8	6.1	2.7	
	프랑스	598,916	538,668	505,545	529,926	537,654	15.7	1.5	-2.7	
	폴란드	414,899	402,466	373,933	431,273	496,932	14.5	15.2	4.6	
	대한민국	-	-	-	-	-	-	-	-	-
	신선·냉장 뼈 없는 쇠고기(0201.30)									
	전 세계	5,955,770	5,654,925	4,999,644	5,841,007	6,632,072	100.0	13.5	2.7	
	네덜란드	1,327,412	1,267,567	1,154,412	1,392,329	1,505,028	22.7	8.1	3.2	
	아일랜드	800,772	767,388	717,445	837,373	942,883	14.2	12.6	4.2	
폴란드	348,037	363,827	390,174	488,555	600,984	9.1	23.0	14.6		
대한민국	-	-	-	-	-	-	-	-	-	
냉동 쇠고기 및 관련 제품	냉동 쇠고기(0202)									
	전 세계	2,244,394	2,086,112	1,821,680	2,232,375	2,884,620	100.0	29.2	6.5	
	폴란드	295,285	281,893	243,351	299,482	397,212	13.8	32.6	7.7	
	네덜란드	336,049	310,235	265,118	341,260	395,770	13.7	16.0	4.2	
	독일	307,468	272,095	203,670	229,786	348,855	12.1	51.8	3.2	
	대한민국	-	-	-	-	-	-	-	-	-
	냉동 쇠고기의 도체(carcase)(0202.10)									
	전 세계	193,687	150,042	96,557	147,673	187,959	100.0	27.3	-0.7	
	네덜란드	42,056	37,443	31,691	46,577	45,740	24.3	-1.8	2.1	
	독일	43,340	26,145	14,900	20,104	44,182	23.5	119.8	0.5	
	폴란드	45,803	37,682	15,559	26,971	33,775	18.0	25.2	-7.3	
	대한민국	7	0	0	0	0	0.0	N/A	-100.0	
	냉동 기타 뼈째로 절단한 쇠고기(0202.20)									
	전 세계	1,997,513	1,889,146	1,691,084	2,039,063	2,670,294	100.0	31.0	7.5	
	폴란드	237,933	235,671	220,359	262,911	354,308	13.3	34.8	10.5	
	네덜란드	289,476	268,116	230,513	289,681	345,539	12.9	19.3	4.5	
	독일	255,990	237,962	185,494	203,051	303,579	11.4	49.5	4.4	
	대한민국	0	2	1	0	0	0.0	N/A	N/A	
	냉동 뼈 없는 쇠고기(0202.30)									
전 세계	48,409	43,674	29,948	43,743	24,093	100.0	-44.9	-16.0		
폴란드	11,221	8,468	7,337	9,470	8,916	37.0	-5.9	-5.6		
네덜란드	4,371	3,337	1,777	3,330	3,009	12.5	-9.6	-8.9		
스페인	1,112	1,301	1,134	4,059	2,808	11.7	-30.8	26.1		
대한민국	-	-	-	-	-	-	-	-	-	
소의 식용 내장(신선· 냉장) (0206.10)	전 세계	24,145	18,805	23,148	26,063	27,406	100.0	5.2	3.2	
	네덜란드	5,975	5,360	8,102	9,380	12,639	46.1	34.7	20.6	
	독일	9,374	6,602	7,174	8,286	7,020	25.6	-15.3	-7.0	
	프랑스	443	517	729	1,361	1,250	4.6	-8.2	29.6	
	대한민국	-	-	-	-	-	-	-	-	
소의 간 (냉동) (0206.22)	전 세계	215,994	207,336	187,890	224,727	245,381	100.0	9.2	3.2	
	네덜란드	66,043	61,315	57,984	67,574	67,435	27.5	-0.2	0.5	
	독일	35,145	35,660	30,215	41,496	38,315	15.6	-7.7	2.2	
	영국	17,657	18,902	17,188	19,425	27,466	11.2	41.4	11.7	
	대한민국	-	-	-	-	-	-	-	-	
기타 조제·보존 처리한 소의 육·내장·피 (1602.50)	전 세계	734,993	699,888	686,965	751,294	886,212	100.0	18.0	4.8	
	폴란드	75,731	75,095	83,274	99,509	134,323	15.2	35.0	15.4	
	독일	116,360	113,139	97,370	115,759	118,423	13.4	2.3	0.4	
	브라질	98,102	86,256	89,532	72,962	94,233	10.6	29.2	-1.0	
	대한민국	6	2	0	23	24	0.0	4.3	41.4	

\*주1: 농식품에 한함

\*주2: EU 회원국 내 수출입 포함

\*주3: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한국산은 ‘코코아 가루’와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 수입하였으나 미미한 비중 차지

- (코코아두) 약 47억 9,159만 달러(한화 약 6조 70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3.6% 감소(HS 1801)
  - 코트디부아르(44.6%), 가나(13.8%), 카메룬(7.7%)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주로 수입하며, 한국산은 수입하지 않음
- (코코아 껍데기·껍질·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약 2,252만 달러(한화 약 285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1.4% 증가(HS 1802)
  - 프랑스(46.7%), 가나(13.3%), 네덜란드(11.1%) 등에서 수입
- (코코아 페이스트) 약 20억 8,431만 달러(한화 약 2조 6,408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5.1% 감소(HS 1803)
  - 코트디부아르(28.3%), 네덜란드(24.6%), 가나(11.6%) 등에서 수입
- (코코아 버터·유지류) 약 29억 7,812만 달러(한화 약 3조 7,732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2.9% 감소(HS 1804)
  - 네덜란드(36.2%), 코트디부아르(13.7%), 독일(11.4%) 등에서 수입
- (코코아 가루) 약 9억 2,772만 달러(한화 약 1조 1,754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3.1% 증가(HS 1805)
  - 네덜란드(35.6%), 독일(15.1%), 프랑스(8.8%) 등 EU 회원국 내 수출입 비중이 큰 편이며, 한국산은 2022년 1,000달러(한화 약 126만 원) 수입
-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 식료품) 약 148억 9,231만 달러(한화 약 18조 8,685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2.4% 감소(HS 1806)
  - 독일(23.7%), 벨기에(15.0%), 폴란드(9.6%) 등 EU 회원국 간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가운데, 2022년 한국산은 전년 대비 73.6% 감소한 11만 6,000 달러(한화 약 1억 4,697만 원) 수입

〈표 II -3〉 EU 코코아 및 관련 제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코코아두 (1801)	전 세계	5,338,749	5,309,377	5,076,545	5,548,951	4,791,585	100.0	-13.6	-2.7
	코트디부아르	2,650,630	2,545,205	2,473,416	2,416,561	2,135,422	44.6	-11.6	-5.3
	가나	832,338	705,441	632,274	768,219	660,799	13.8	-14.0	-5.6
	카메룬	338,619	457,183	426,424	436,006	370,052	7.7	-15.1	2.2
	나이지리아	542803	591471	420034	548930	329789	6.9	-39.9	-11.7
	네덜란드	125519	101691	170233	277309	306229	6.4	10.4	25.0
	대한민국	-	-	-	-	-	-	-	-
코코아 껍데기·껍질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2)	전 세계	15,733	16,984	15,638	20,214	22,516	100.0	11.4	9.4
	프랑스	279	407	377	3,818	10,514	46.7	175.4	147.8
	가나	656	3,326	2,455	3,006	3,004	13.3	-0.1	46.3
	네덜란드	4,697	4,321	5,128	3,321	2,498	11.1	-24.8	-14.6
	코트디부아르	1671	1546	1954	2520	2161	9.6	-14.2	6.6
	독일	4390	2664	3117	3173	1836	8.2	-42.1	-19.6
	대한민국	-	-	-	-	-	-	-	-
코코아 페이스트 (1803)	전 세계	1,808,525	1,836,439	2,090,777	2,195,791	2,084,309	100.0	-5.1	3.6
	코트디부아르	520,167	512,146	586,604	607,477	589,168	28.3	-3.0	3.2
	네덜란드	440,589	463,815	589,847	591,318	512,564	24.6	-13.3	3.9
	가나	259,829	242,749	234,269	239,633	241,520	11.6	0.8	-1.8
	독일	215260	189149	160723	205233	179140	8.6	-12.7	-4.5
	프랑스	99568	136906	159554	154833	146553	7.0	-5.3	10.1
	대한민국	-	-	-	-	-	-	-	-
코코아 버터·유지류 (1804)	전 세계	3,153,955	3,260,447	3,365,569	3,417,480	2,978,124	100.0	-12.9	-1.4
	네덜란드	1,156,549	1,191,352	1,194,187	1,200,979	1,078,016	36.2	-10.2	-1.7
	코트디부아르	378,164	355,370	376,264	352,870	408,040	13.7	15.6	1.9
	독일	341,313	366,431	345,040	414,748	340,245	11.4	-18.0	-0.1
	프랑스	312,227	304,986	325,099	322,944	273,923	9.2	-15.2	-3.2
	가나	277,877	314,158	308,387	322,348	228,615	7.7	-29.1	-4.8
	대한민국	-	-	-	-	-	-	-	-
코코아 가루 (1805)	전 세계	805,354	775,812	788,287	899,744	927,720	100.0	3.1	3.6
	네덜란드	295,816	292,446	287,061	320,825	330,550	35.6	3.0	2.8
	독일	182,367	155,569	156,770	162,840	140,246	15.1	-13.9	-6.4
	프랑스	68,587	69,466	68,233	77,443	81,862	8.8	5.7	4.5
	가나	48512	54675	48527	65050	66958	7.2	2.9	8.4
	대한민국	0	79	86	2	1	0.0	-50.0	N/A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 (1806)	전 세계	13,375,025	13,390,381	13,578,604	15,254,219	14,892,313	100.0	-2.4	2.7
	독일	3,216,601	3,178,751	3,302,629	3,657,187	3,533,860	23.7	-3.4	2.4
	벨기에	2,156,525	2,088,563	2,078,557	2,507,653	2,239,676	15.0	-10.7	1.0
	폴란드	969,289	1,085,491	1,233,784	1,385,994	1,423,255	9.6	2.7	10.1
	이탈리아	1,196,902	1,166,476	1,149,527	1,352,681	1,342,042	9.0	-0.8	2.9
	대한민국	161	45	36	439	116	0.0	-73.6	-7.9

\*주1: EU 회원국 내 수출입 포함

\*주2: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EU로 수입된 한국산 커피류 제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의 비중이 가장 큼

-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약 222억 7,916만 달러(한화 약 28조 2,276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28.0% 증가(HS 0901)<sup>16)</sup>
  -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에서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으며(21.2%), 뒤이어 독일(10.2%), 스위스(8.0%) 등에서 수입
  - 2022년 한국산은 전년 대비 102.2% 증가한 18만 2,000달러(한화 약 2억 3,059만 원) 수입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지 않은 커피) 약 135억 5,589만 달러(한화 약 17조 1,753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50.1% 증가(HS 0901.11)
  - 브라질(34.7%), 베트남(12.1%), 온두라스(6.5%) 등에서 수입하였으며, 한국산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5만 달러(한화 약 6,335만 원) 수입
-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지 않은 커피) 약 2억 45만 달러(한화 약 2,53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5.0% 증가(HS 0901.12)
  - 독일(47.5%), 베트남(22.5%), 스페인(9.9%)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며, 한국산은 2021년 3,000달러(한화 약 380만 원)를 수입한 이후 수입되지 않음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고 볶은 커피) 약 80억 5,367만 달러(한화 약 10조 2,03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4.9% 증가(HS 0901.21)
  - 스위스(20.5%), 독일(17.3%), 이탈리아(17.3%) 등 유럽 국가 및 EU 회원국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동년 한국산 수입은 11만 2,000달러(한화 약 1억 4,190만 원)로 전년 대비 60.0% 증가
- (카페인을 제거하고 볶은 커피) 약 4억 913만 달러(한화 약 5,183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1.3% 감소(HS 0901.22)
  - 타 품목과 유사하게 스위스(31.0%), 프랑스(21.2%), 독일(16.6%) 등 유럽 국가 중심으로 수출입이 이뤄진 가운데, 2022년 한국산은 3,000달러(한화 약 380만 원) 수입

16)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지 않은 것)(HS 0901.11),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볶지 않은 것)(HS 0901.12),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볶은 것)(HS 0901.21),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볶은 것)(HS 0901.22), 기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HS 0901.90)

- (기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약 4,999만 달러(한화 약 633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4.7% 증가(HS 0901.90)
  - 독일(28.9%), 이탈리아(18.1%), 프랑스(12.3%) 등 역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품목으로, 한국산은 전년보다 33.3% 증가한 1만 6,000달러(한화 약 2,025만 원) 수입

〈표 II-4〉 EU 커피 및 관련 제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901)	전 세계	15,509,151	14,701,637	15,249,362	17,399,027	22,279,160	100.0	28.0	9.5
	브라질	2,198,861	2,124,404	2,189,036	2,834,886	4,715,092	21.2	66.3	21.0
	독일	1,641,128	1,554,916	1,669,549	1,917,730	2,268,276	10.2	18.3	8.4
	스위스	1,822,367	1,795,016	1,898,191	1,979,602	1,778,274	8.0	-10.2	-0.6
	베트남	1,459,322	1,196,982	1,134,248	1,083,216	1,689,763	7.6	56.0	3.7
	이탈리아	1,019,727	998,815	992,759	1,211,204	1,486,617	6.7	22.7	9.9
	<b>대한민국</b>	<b>168</b>	<b>23</b>	<b>56</b>	<b>90</b>	<b>182</b>	<b>0.0</b>	<b>102.2</b>	<b>2.0</b>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볶지 않은 것) (0901.11)	전 세계	8,274,713	7,667,249	7,818,721	9,031,930	13,555,885	100.0	50.1	13.1
	브라질	2,196,600	2,120,158	2,186,489	2,831,823	4,706,990	34.7	66.2	21.0
	베트남	1,427,826	1,172,508	1,108,513	1,038,716	1,642,065	12.1	58.1	3.6
	온두라스	635,280	589,514	652,337	695,117	879,565	6.5	26.5	8.5
	콜롬비아	527,350	530,269	561,076	634,081	811,923	6.0	28.0	11.4
	페루	373,419	359,275	333,665	366,011	745,457	5.5	103.7	18.9
	<b>대한민국</b>	<b>2</b>	<b>3</b>	<b>2</b>	<b>2</b>	<b>50</b>	<b>0.0</b>	<b>2,400.0</b>	<b>123.6</b>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볶지 않은 것) (0901.12)	전 세계	152,194	147,368	156,012	174,294	200,450	100.0	15.0	7.1
	독일	73,308	73,249	87,337	83,220	95,118	47.5	14.3	6.7
	베트남	29,624	23,033	23,563	41,852	45,105	22.5	7.8	11.1
	스페인	19,869	22,480	21,886	21,614	19,806	9.9	-8.4	-0.1
	멕시코	5,596	5,758	5,373	5,531	8,474	4.2	53.2	10.9
	캐나다	743	1,960	2,216	3,942	6,551	3.3	66.2	72.3
	<b>대한민국</b>	<b>14</b>	<b>0</b>	<b>0</b>	<b>3</b>	<b>0</b>	<b>0.0</b>	<b>-100.0</b>	<b>-100.0</b>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볶은 것) (0901.21)	전 세계	6,580,241	6,435,583	6,803,096	7,679,227	8,053,670	100.0	4.9	5.2
	스위스	1,618,766	1,631,803	1,739,728	1,823,803	1,649,283	20.5	-9.6	0.5
	독일	1,192,198	1,151,810	1,180,481	1,409,919	1,625,638	20.2	15.3	8.1
	이탈리아	938,115	911,691	916,046	1,121,617	1,391,586	17.3	24.1	10.4
	프랑스	767,964	729,160	864,566	975,268	774,407	9.6	-20.6	0.2
	네덜란드	577,685	541,274	556,828	586,039	611,177	7.6	4.3	1.4
	<b>대한민국</b>	<b>124</b>	<b>13</b>	<b>44</b>	<b>70</b>	<b>112</b>	<b>0.0</b>	<b>60.0</b>	<b>-2.5</b>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볶은 것) (0901.22)	전 세계	425,308	391,815	424,086	461,236	409,128	100.0	-11.3	-1.0
	스위스	192,862	158,021	157,408	153,184	126,948	31.0	-17.1	-9.9
	프랑스	88,907	91,364	101,189	123,566	86,735	21.2	-29.8	-0.6
	독일	43,977	45,905	48,167	59,984	68,097	16.6	13.5	11.6
	네덜란드	30,330	26,083	29,760	35,672	45,528	11.1	27.6	10.7
	이탈리아	26,077	20,650	25,592	28,722	29,644	7.2	3.2	3.3
	<b>대한민국</b>	<b>0</b>	<b>0</b>	<b>0</b>	<b>2</b>	<b>3</b>	<b>0.0</b>	<b>50.0</b>	<b>N/A</b>
기타 커피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901.90)	전 세계	59,871	51,193	38,982	43,600	49,991	100.0	14.7	-4.4
	독일	7,961	7,063	7,563	8,664	14,454	28.9	66.8	16.1
	이탈리아	9,407	5,667	4,042	4,608	9,061	18.1	96.6	-0.9
	프랑스	7,847	7,699	7,219	7,169	6,137	12.3	-14.4	-6.0
	오스트리아	2,441	2,283	3,153	5,035	2,971	5.9	-41.0	5.0
	벨기에	6,425	6,188	1,951	2,855	2,899	5.8	1.5	-18.0
	<b>대한민국</b>	<b>27</b>	<b>6</b>	<b>9</b>	<b>12</b>	<b>16</b>	<b>0.0</b>	<b>33.3</b>	<b>-12.3</b>

\*주1: EU 회원국 내 수출입 포함

\*주2: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수입산 팜유 및 관련 제품 중 한국산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그 비중은 매우 미미함

- (팜너트와 핵) 약 309만 달러(한화 약 3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6.0% 증가(HS 1207.10)
  - 프랑스(34.4%), 그리스(31.5%), 스페인(6.7%) 등에서 주로 수입
- (팜유와 그 분획물) 약 94억 6,973만 달러(한화 약 11조 9,981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1.0% 증가(HS 1511)<sup>17)</sup>
  - 인도네시아(28.5%) 및 말레이시아(19.3%) 등에서 주로 수입하며, 한국산은 2,000달러(한화 약 253만 원) 수입
-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 약 37억 9,963만 달러(한화 약 4조 8,141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7.1% 증가(HS 1511.10)
  - 말레이시아(20.5%), 과테말라(19.9%), 파푸아뉴기니(11.0%) 등에서 수입
-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약 56억 6,661만 달러(한화 약 7억 1,795만 원) 수입('22), 전년 대비 13.8% 증가(HS 1511.90)
  - 인도네시아(40.5%), 네덜란드(20.4%), 말레이시아(18.6%) 등에서 수입하며, 한국산은 2,000달러(한화 약 253만 원) 수입
-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의 조유) 약 7억 6,559만 달러(한화 약 9,700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6.4% 증가(HS 1513.21)
  - 말레이시아(28.8%), 파푸아뉴기니(12.0%), 콜롬비아(10.9%) 등에서 주로 수입,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그 밖의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 약 7억 361만 달러(한화 약 8,914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56.3% 증가(HS 1513.29)
  -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34.9%), 인도네시아(34.6%), 네덜란드(14.4%) 등으로 집계,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팜너트나 핵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 유박) 약 4억 928만 달러(한화 약 5,185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4.2% 증가(HS 2306.60)

17) 팜유와 그 분획물(HS 1511),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HS 1511.10),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HS 1511.90) 포함

- 인도네시아산 수입 비중이 73.4%로 압도적, 이 외에 네덜란드(10.7%), 독일(6.4%) 순

<표 II-5> EU 팜유 및 관련 제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팜너트와 핵 (1207.10)	전 세계	2,586	2,935	2,527	2,662	3,087	100.0	16.0	4.5	
	프랑스	179	490	1,069	993	1,063	34.4	7.0	56.1	
	그리스	1,249	1,149	903	797	972	31.5	22.0	-6.1	
	스페인	378	378	39	122	206	6.7	68.9	-14.1	
	벨기에	5	-	49	37	183	5.9	394.6	146.0	
	남아공	-	-	14	114	165	5.3	44.7	N/A	
	대한민국	-	-	-	-	-	-	-	-	
팜유와 그 분획물	팜유와 그 분획물(1511)									
	전 세계	6,521,325	6,084,173	6,938,536	8,531,155	9,469,728	100.0	11.0	9.8	
	인도네시아	2,276,466	2,071,745	2,497,343	2,830,276	2,696,362	28.5	-4.7	4.3	
	말레이시아	1,261,694	1,209,710	1,425,697	1,697,834	1,831,493	19.3	7.9	9.8	
	네덜란드	890,172	874,423	963,117	1,166,023	1,304,251	13.8	11.9	10.0	
	대한민국	0	0	0	-	2	0.0	N/A	N/A	
	팜유와 그 분획물 조유(crude oil)(1511.10)									
	전 세계	2,839,154	3,341,237	3,708,527	3,547,883	3,799,626	100.0	7.1	7.6	
	말레이시아	744,184	819,654	963,464	909,348	777,362	20.5	-14.5	1.1	
	과테말라	279,343	245,544	289,665	554,851	755,203	19.9	36.1	28.2	
	파푸아뉴기니	339,657	293,626	303,436	402,963	417,463	11.0	3.6	5.3	
	대한민국	-	-	-	-	-	-	-	-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1511.90)									
	전 세계	3,668,867	2,738,516	3,222,953	4,980,432	5,666,608	100.0	13.8	11.5	
	인도네시아	1,586,393	868,050	1,185,770	2,254,392	2,295,083	40.5	1.8	9.7	
네덜란드	825,352	787,112	856,481	1,047,252	1,158,349	20.4	10.6	8.8		
말레이시아	517,510	390,055	462,232	788,488	1,054,131	18.6	33.7	19.5		
대한민국	0	0	0	-	2	0.0	N/A	N/A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의 조유 (1513.21)	전 세계	655,310	411,809	453,885	719,470	765,591	100.0	6.4	4.0	
	말레이시아	247,181	116,919	185,740	342,296	220,380	28.8	-35.6	-2.8	
	파푸아뉴기니	70,562	49,902	51,642	76,916	91,961	12.0	19.6	6.8	
	콜롬비아	72,777	37,287	34,840	56,572	83,424	10.9	47.5	3.5	
	과테말라	19,018	21,690	17,907	34,653	72,486	9.5	109.2	39.7	
	네덜란드	19,925	10,053	7,890	42,467	70,820	9.3	66.8	37.3	
	대한민국	-	-	-	-	-	-	-	-	
그 밖의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 (1513.29)	전 세계	327,962	212,678	249,299	450,159	703,608	100.0	56.3	21.0	
	말레이시아	78,905	62,692	65,890	133,177	245,446	34.9	84.3	32.8	
	인도네시아	111,695	58,304	75,198	153,855	243,565	34.6	58.3	21.5	
	네덜란드	82,507	52,678	64,542	80,857	101,492	14.4	25.5	5.3	
	독일	25,535	18,357	22,508	44,295	59,545	8.5	34.4	23.6	
	스페인	7,913	4,214	5,333	11,130	21,285	3.0	91.2	28.1	
대한민국	-	-	-	-	-	-	-	-		
팜너트나 핵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 (2306.60)	전 세계	390,682	343,608	323,461	392,951	409,282	100.0	4.2	1.2	
	인도네시아	226,196	206,386	222,961	280,380	300,356	73.4	7.1	7.3	
	네덜란드	30,400	37,395	29,659	37,215	43,867	10.7	17.9	9.6	
	독일	40,588	46,900	37,512	47,484	26,199	6.4	-44.8	-10.4	
	말레이시아	65,758	33,591	13,758	8,862	18,048	4.4	103.7	-27.6	
	코트디부아르	5,381	3,688	3,728	4,073	6,423	1.6	57.7	4.5	
	대한민국	-	-	-	-	-	-	-	-	

\*주1: 농식품에 한함

\*주2: EU 회원국 내 수출입 포함

\*주3: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한국산은 ‘대두 기타’와 ‘채유에 적합한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대두유 및 그 분획물 기타’ 등 수입, 타 수입산 대비 매우 적은 수입비중 차지

- (대두) 약 94억 6,790만 달러(한화 약 11조 9,910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9% 증가(HS 1201)<sup>18)</sup>
  - 브라질산이 약 절반에 달하는 비중(47.4%)을 차지하며, 그 외 미국산(29.9%), 캐나다산(5.9%) 순
  - 한국산은 전년 대비 6.0% 감소한 4만 7,000달러(한화 약 5,952만 원)를 수입하였으며, 모두 ‘대두 기타(HS 1201.90)’로 구성
- (대두 종자) 약 6,994만 달러(한화 약 885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40.7% 증가(HS 1201.10)
  - 미국(24.4%), 오스트리아(20.2%), 프랑스(10.4%) 등에서 주로 수입
- (대두 기타) 약 93억 8,999만 달러(한화 약 11조 8,924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6% 증가(HS 1201.90)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47.8%), 미국(30.0%), 캐나다(5.9%) 등
- (채유에 적합한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약 1억 8,154만 달러(한화 약 2,299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6.1% 증가(HS 1208.10)
  - 네덜란드산 수입비중이 가장 크며(36.4%), 그 외 벨기에(8.1%), 오스트리아(7.5%) 등 EU 회원국 간 거래 중심
  - 한국산 수입은 2018년 이후 점차 확대되며 2022년에 전년 대비 92.3% 증가한 2만 5,000달러(한화 약 3,166만 원)로 집계
- (대두유 및 그 분획물) 약 16억 6,642만 달러(한화 약 2조 1,105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21.8% 증가(HS 1507)<sup>19)</sup>
  - 네덜란드(24.8%), 우크라이나(16.4%), 아르헨티나(7.4%) 등에서 주로 수입
  - 2022년 한국산은 4,000달러(한화 약 506만 원) 수입하였으며, ‘대두유 및 그 분획물(HS 1507.90)’을 주로 수입

18) 대두 종자(HS 1201.10), 대두 기타(HS 1201.90) 포함

19) 대두유 및 그 분획물 조유(HS 1507.10), 대두유 및 그 분획물 기타(HS 1507.90) 포함

- (대두유 및 그 분획물 조유) 약 12억 2,529만 달러(한화 약 1조 5,518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3.4% 증가(HS 1507.10)
  - 주요 수입국은 우크라이나(22.2%), 네덜란드(16.8%), 노르웨이(7.2%) 등으로,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음
- (대두유 및 그 분획물 기타) 약 4억 3,885만 달러(한화 약 5,558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52.8% 증가(HS 1507.90)
  - 네덜란드(47.3%), 아르헨티나(15.3%), 독일(7.4%) 등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며, 아르헨티나산은 전년 대비 매우 큰 규모로 증가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 유박) 약 118억 6,444만 달러(한화 약 15조 263억 원) 수입('22), 전년 대비 13.9% 증가(HS 2304)
  - 브라질(32.3%), 아르헨티나(30.6%), 네덜란드(8.0%) 등에서 주로 수입하며, 한국산은 2018년 1,000달러(한화 약 126만 원) 수입한 이후 수입되지 않음

〈표 II -6〉 EU 대두 및 관련 제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대두 및 관련 제품	대두(1201)									
	전 세계	6,851,225	6,202,810	7,035,541	9,293,761	9,467,899	100.0	1.9	8.4	
	브라질	2,183,892	1,968,957	3,163,169	4,891,317	4,487,980	47.4	-8.2	19.7	
	미국	3,209,247	2,634,007	2,148,635	2,505,175	2,830,394	29.9	13.0	-3.1	
	캐나다	353,744	454,786	566,845	644,024	561,859	5.9	-12.8	12.3	
	<b>대한민국</b>	<b>35</b>	<b>43</b>	<b>27</b>	<b>50</b>	<b>47</b>	<b>0.0</b>	<b>-6.0</b>	<b>7.6</b>	
	대두 종자(1201.10)									
	전 세계	44,931	40,587	46,728	49,709	69,939	100.0	40.7	11.7	
	미국	16,640	8,819	17,004	19,581	17,058	24.4	-12.9	0.6	
	오스트리아	7,641	6,705	7,973	10,329	14,105	20.2	36.6	16.6	
	프랑스	2,460	3,193	2,391	2,767	7,248	10.4	161.9	31.0	
	<b>대한민국</b>	<b>-</b>	<b>-</b>	<b>-</b>	<b>-</b>	<b>-</b>	<b>-</b>	<b>-</b>	<b>-</b>	
	대두 기타(1201.90)									
	전 세계	6,789,318	6,151,289	6,980,103	9,238,297	9,389,988	100.0	1.6	8.4	
	브라질	2,182,663	1,968,957	3,163,169	4,891,315	4,487,974	47.8	-8.2	19.7	
	미국	3,192,605	2,625,187	2,131,630	2,485,594	2,813,334	30.0	13.2	-3.1	
캐나다	353,297	454,051	563,698	642,880	555,260	5.9	-13.6	12.0		
<b>대한민국</b>	<b>35</b>	<b>43</b>	<b>27</b>	<b>50</b>	<b>47</b>	<b>0.0</b>	<b>-6.0</b>	<b>7.6</b>		



구분	수출국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채유에 적합한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1208.10)	전 세계	232,628	183,021	149,512	156,406	181,539	100.0	16.1	-6.0	
	네덜란드	64,759	36,762	50,027	56,044	66,015	36.4	17.8	0.5	
	벨기에	684	1,429	937	3,945	14,693	8.1	272.4	115.3	
	오스트리아	12,392	10,245	10,569	12,910	13,661	7.5	5.8	2.5	
	스페인	13,817	6,984	13,325	13,295	13,403	7.4	0.8	-0.8	
	루마니아	7,420	7,168	8,353	10,420	12,936	7.1	24.1	14.9	
	<b>대한민국</b>	<b>1</b>	<b>3</b>	<b>4</b>	<b>13</b>	<b>25</b>	<b>0.0</b>	<b>92.3</b>	<b>123.6</b>	
대두유 및 관련 제품	대두유 및 그 분획물(1507)									
	전 세계	754,433	780,370	924,684	1,368,005	1,666,416	100.0	21.8	21.9	
	네덜란드	185,131	201,815	244,113	348,646	413,283	24.8	18.5	22.2	
	우크라이나	65,582	109,512	137,307	227,992	273,564	16.4	20.0	42.9	
	아르헨티나	7,016	19,810	5,173	140,332	124,089	7.4	-11.6	105.1	
	<b>대한민국</b>	<b>13</b>	<b>80</b>	<b>0</b>	<b>2</b>	<b>4</b>	<b>0.0</b>	<b>100.0</b>	<b>-25.5</b>	
	대두유 및 그 분획물 조유(crude oil)(1507.10)									
	전 세계	542,545	588,774	657,411	1,080,536	1,225,293	100.0	13.4	22.6	
	우크라이나	65,046	109,134	137,211	227,657	272,527	22.2	19.7	43.1	
	네덜란드	72,288	90,898	125,269	187,184	205,512	16.8	9.8	29.9	
	노르웨이	48,279	50,351	55,870	90,125	87,847	7.2	-2.5	16.1	
	<b>대한민국</b>	<b>-</b>	<b>-</b>	<b>-</b>	<b>-</b>	<b>-</b>	<b>-</b>	<b>-</b>	<b>-</b>	
	대두유 및 그 분획물 기타(1507.90)									
	전 세계	211,778	191,583	266,980	287,139	438,851	100.0	52.8	20.0	
	네덜란드	112,843	110,915	118,841	161,405	207,775	47.3	28.7	16.5	
아르헨티나	0	0	9	3	66,945	15.3	2,231,400.0	N/A		
독일	20,574	12,976	72,644	28,909	32,641	7.4	12.9	12.2		
<b>대한민국</b>	<b>13</b>	<b>80</b>	<b>0</b>	<b>2</b>	<b>4</b>	<b>0.0</b>	<b>100.0</b>	<b>-25.5</b>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2304)	전 세계	9,028,780	8,445,270	8,352,990	10,416,085	11,864,437	100.0	13.9	7.1	
	브라질	3,022,028	2,883,199	2,803,444	3,234,646	3,831,244	32.3	18.4	6.1	
	아르헨티나	2,538,988	2,360,829	2,326,856	3,070,573	3,629,571	30.6	18.2	9.3	
	네덜란드	748,056	739,947	820,403	836,679	951,389	8.0	13.7	6.2	
	독일	598,652	590,635	589,799	740,367	836,832	7.1	13.0	8.7	
	슬로베니아	191,763	153,378	173,600	228,935	307,433	2.6	34.3	12.5	
	<b>대한민국</b>	<b>1</b>	<b>0</b>	<b>0</b>	<b>0</b>	<b>0</b>	<b>0.0</b>	<b>N/A</b>	<b>-100.0</b>	

\*주1: EU 회원국 내 수출입 포함

\*주2: N/A는 해당사항(또는 해당값) 없음을 의미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 EUDR 규정 분석

□ 2023년 6월 29일부로 발효된 최종 규정((EU) 2023/1115)은 크게 9장(Chapter) 38조(Article) 및 2개 부속서(Annex)로 구성

<표 II-7>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의 구성

구분	조항명
<b>제1장</b>	<b>일반조항</b>
제1조	주제 및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금지
<b>제2장</b>	<b>운영자 및 거래자의 의무</b>
제4조	운영자의 의무
제5조	거래자의 의무
제6조	공인 대리인
제7조	제3국에 설립된 사업자의 시장 출시
제8조	실사
제9조	정보 요구사항
제10조	위험 평가
제11조	위험 완화
제12조	실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보고 및 기록보관
제13조	실사 간소화
<b>제3장</b>	<b>회원국과 관할당국의 의무</b>
제14조	관할당국
제15조	기술지원, 안내 및 정보교환
제16조	점검 수행 의무
제17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련 제품
제18조	운영자 및 비(非)중소기업 거래자에 대한 점검
제19조	중소기업 거래자에 대한 점검
제20조	관할당국의 비용 회수
제21조	협력 및 정보교환
제22조	보고
제23조	임시조치
제24조	비준수 시 시정 조치
제25조	패널티
<b>제4장</b>	<b>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 또는 퇴출 절차</b>
제26조	통제 수단
제27조	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
제28조	전자 인터페이스
<b>제5장</b>	<b>국가 벤치마킹 시스템 및 제3국 협력</b>
제29조	국가 평가
제30조	제3국 협력
<b>제6장</b>	<b>입증된 우려사항</b>
제31조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입증된 우려사항
제32조	정의에 대한 접근
<b>제7장</b>	<b>정보시스템</b>
제33조	정보시스템
<b>제8장</b>	<b>검토</b>
제34조	검토

구분	조항명
제9장	최종 규정
제35조	대표단 행사
제36조	위원회 절차
제37조	폐지
제38조	발효 및 적용일자
부속서 I	제1조에 언급된 품목 및 제품
부속서 II	실사 선언서

\*출처: EU Deforestation Regulation(EU) 2023/1115)

## □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이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

- 규정이 적용되는 7개 품목 및 이와 관련한 제품은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 시장으로의 출시·공급 및 유럽연합 회원국산 제품의 수출<sup>20)</sup> 금지
  - 해당 제품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아야 하며 (deforestation-free) ▲생산국의 관련 규정<sup>21)</sup>에 적합하게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가 제공되어야 함

## □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공급에 참여하는 ‘운영자’ 및 ‘거래자’ 는 산림 전용 방지 의무 이행 필수

- 지정된 7개 품목으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운영자(Operator)’ 에 ‘실사(Due Diligence)’ 의무 발생
  - ‘운영자’는 제품을 가공하거나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소비자에게 유통할 목적 또는 운영자가 사업적 용도로 자체 사용하기 위해 EU 시장에 ‘규제 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로 정의
  - ‘운영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 금지 요건(①산림을 전용한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아야 하며 ②생산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되어야

20) Regulation (EU) No 952/2013 269조에 따라 EU산 제품을 관세 영역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로, ▲가공(outward processing)을 위해 일시 수출하는 경우 ▲최종 사용 절차에 따라 출시된 이후 관세 영역 외부로 반출된 경우 ▲목적지에 관계없이 항공기 또는 선박 공급품으로 인도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가 면제되고 이러한 공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국내 운송 절차에 따라 출시된 경우 ▲EU 관세 영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경우는 ‘수출’ 로 간주하지 않음

21) ▲토지 사용권 ▲환경보호 ▲산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산림 관련 규칙(목재 벌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3자 권리 ▲노동권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 ▲원주민의 권리에 관해 UN 선언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PIC) ▲세금, 부패 방지, 무역 및 관세 규정의 측면에서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할 뿐만 아니라 ③실사 선언서를 제공해야 함)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본 규정에 명시된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운영자’는 실사 결과 해당 제품이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경우 시장 출시 전 또는 수출 전 관할당국에 실사 선언서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에 실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는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해당 제품을 EU 밖으로 수출할 수 없음
- 특히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① 7개 ‘규제 품목’으로 생산한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②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규정 미준수와 관련한 무시할 수 없는 위험<sup>22)</sup>이 드러난 경우
  - ③ 운영자가 실사 및 실사 선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운영자는 실사 선언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규정 준수에 책임을 지게 되며 실사 선언서는 제출일로부터 5년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함
- 제3국 사업자가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하는 첫 번째 자연인 또는 법인을 ‘운영자’로 간주
- ‘규제 품목’으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운영자’ 이외에 공급망에 위치한 ‘거래자(Trader)’는 규제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 및 보관
  - ‘거래자’는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공급해 준 운영자 및 거래자의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주소(가능한 경우) 및 실사 선언서 참조번호 ▲해당 제품을 공급한 운영자 및 거래자의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주소(가능한 경우)를 수집하여 시장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
  - 위와 같은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할당국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출시한 제품이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자료 또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입수 또는 알게 된 경우 회원국 관할당국에 즉시 알려야 함

22)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이 산림 전용 방지 요건(①산림을 전용한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아야 함 ②생산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되어야 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위험

- 규정에 명시된 책임 및 의무사항은 EU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EU에 본사 또는 영구 사업체, 등록사무소 등이 소재한 법인이나 협회에 적용
  - 국내 수출업체에 직접적으로 규정 이행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현지 업체의 실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업체의 규정 숙지 및 협력이 필요한 상황
- 운영자 또는 거래자는 공인 대리인에 실사 선언서 제출 위임 가능
  - 공인 대리인은 요청 시 EU 공식 언어로 작성된 위임장 사본을 관할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실사 선언서가 처리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 또는 불가피한 경우 영어로 작성된 실사 선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실사’ 를 필수적으로 이행

- ‘운영자’ 는 EU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출시하기 전 개별 공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실사를 수행
  - ‘실사(Due Diligence)’ 활동은 ▲특정 정보, 데이터 및 문서 수집(제9조)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제10조) ▲위험 완화(Risk mitigation)(제11조) 조치를 포함
- (특정 정보, 데이터 및 문서 수집)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정보 및 자료를 수집 및 보관
  - 의무사항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는 ‘운영자’는 제품의 시장 출시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규정 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문서 등을 수집·정리·보관
  - 입증자료는 ①제품 설명 ②양 ③생산국 ④제품에 포함 또는 사용된 ‘규제 품목’이 생산된 모든 토지의 위치 정보(geolocation)와 생산일자 또는 시간 범위 ⑤제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 ⑥ 제품을 공급한 기업,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 ⑦제품의 산림 전용 방지(deforestation-free)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⑧‘규제 품목’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된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위험 평가) 수집된 정보 및 문서를 근거로 제품의 산림

## 전용 위험을 평가

- ‘운영자’는 실사에 요구되는 정보 및 문서를 바탕으로 EU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
  - 이때, ‘운영자’는 ①국가 평가에 따른 위험 할당 ②생산국 내 산림의 존재 ③생산국 내 원주민의 존재 등 14가지 기준을 고려
  - 위험 평가 후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운영자’는 최소 1년에 1회 위험 평가를 문서화 및 검토하고, 관할당국 요청 시 이를 제공
- (위험 완화) 산림 전용 위험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이를 완화하는 절차 및 조치를 채택하여 수행
- 위험 평가 결과 해당 제품이 부적합할 위험이 없거나 무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내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위험 완화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위험 완화 절차 및 조치에 관한 결정은 문서화하여 최소한 1년에 1회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관할당국 요청 시 ‘운영자’는 이를 제공

〈표 II-8〉 실사 항목 및 세부 내용

실사 항목	세부 내용
정보, 데이터, 문서의 수집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는 제품의 시장출시일 또는 (EU 시장에서의)수출일로부터 5년간 규정 준수 입증 정보 및 문서 등을 수집·정리·보관</li> <li>- 입증자료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제품 설명(상품명 및 유형 포함): 목재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종(species)의 일반명칭 및 전체 학명과 포함 또는 사용한 품목에 관한 설명 포함</li> <li>②양: EU 시장 반입 또는 반출 제품의 경우 순중량(kg)·부피·수량으로 표시, 필요시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부속서1에서 정하는 보충 단위 사용</li> <li>③생산국(또는 생산국의 일부 지역)</li> <li>④제품에 포함 또는 사용된 ‘규제 품목’ 이 생산된 토지의 위치 정보 (geolocation) 및 생산일자(또는 시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토지에서 생산된 ‘규제 품목’ 을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각 토지의 위치 정보 포함</li> <li>· 해당 토지에서 산림 전용(deforestation) 또는 산림 황폐화(forest degradation) 발생 시 해당 토지의 모든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자격을 박탈</li> <li>· 소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과 이러한 제품으로 생산된 또 다른 제품은 소가 사육된 모든 시설을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포함</li> <li>· ‘규제 품목’ 으로 생산한 부속서1 내 모든 관련 제품의 경우에도 토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li> </ul> </li> </ul> </li> </ul>

실사 항목	세부 내용
정보, 데이터, 문서의 수집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제품을 공급받은 기업 및 개인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li> <li>⑥제품을 공급한 기업,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li> <li>⑦제품의 산림 전용 방지(deforestation-free)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li> <li>⑧ ‘규제 품목’ 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된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7개 품목 생산 목적을 위한 해당 지역의 사용 권리 약정서 포함)</li> </ul>
위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자’ 는 수집된 정보를 확인 및 분석해야 하며, 위험 평가 결과 규정 미준수 위험이 있는 경우 EU 시장 출시 불가</li> <li>- 위험 평가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제29조(국가 평가)에 따른 관련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대한 위험 할당</li> <li>②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산림의 존재</li> <li>③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원주민의 존재</li> <li>④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원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및 협력</li> <li>⑤ ‘규제 품목’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사용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원주민의 합리적 주장의 존재</li> <li>⑥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만연한 산림 전용 또는 산림 황폐화의 존재</li> <li>⑦9(1)조(정보 및 문서 요구사항)에 언급된 정보의 출처, 신뢰성, 유효성 및 기타 사용 가능한 문서에 대한 접근</li> <li>⑧부패 수준, 문서 및 데이터 위조, 법 집행력 부족, 국제 인권 침해, 무력 충돌 또는 UN안전보장이사회나 EU 집행위에서 부과한 제재의 존재와 같이 생산국 및 원산지(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우려</li> <li>⑨제품 가공단계 및 공급망의 복잡성(특히, 제품과 ‘규제 품목’ 을 생산한 토지 간 연결의 어려움)</li> <li>⑩본 규정 우회 위험 또는 산림 전용이나 산림 황폐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산지 미상 제품과의 혼합 위험</li> <li>⑪본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의 결론</li> <li>⑫31조(자연인 또는 법인의 입증된 우려사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된 우려사항 및 관련 공급망 내 ‘운영자’ 또는 ‘거래자’ 의 규정 미준수 이력에 관한 정보</li> <li>⑬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위험을 가리키는 모든 정보</li> <li>⑭본 규정 준수에 관한 보충 정보(인증 또는 제3자 검증에 의한 정보, 유럽연합 의회 Directive(EU) 2018/2001 30(5)조에 따른 자율체계 포함)</li> </ul> </li> </ul>
위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 평가 결과 제품에 규정 미준수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 는 시장 출시 전 위험 완화 절차 및 조치를 채택하여 수행</li> <li>- 위험 완화 절차 및 조치는 다음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추가적인 정보, 데이터 또는 문서 요구</li> <li>②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li> <li>③9조의 정보 요구사항과 관련한 기타 조치</li> </ul> </li> </ul>

- ‘운영자’는 실사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관리
  - ‘운영자’는 EU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함
  - 최소한 연1회 이상 실사 시스템을 검토하여 업데이트해야 하며, 업데이트 시 이와 관련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 ‘운영자’는 매년 인터넷을 포함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기업 실사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하는 정보에는 EU 데이터 보호법을 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설명·양·생산국에 관한 요약 정보 ▲위험 평가의 결론 및 수행된 위험 완화 조치 ▲(필요 시) 원주민·지역사회·기타 관례적 소유권 보유자 또는 시민단체와의 협의 과정에 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 실사 후 ‘운영자’는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작성
  -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실사 선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실사 선언서류의 참조번호는 세관에 제공되어 세관이 해당 제품의 반입을 통제할 수 있음
  - 실사 선언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함

〈표 II-9〉 실사 선언서 포함 내용

- 
- 운영자 이름 및 주소, 수출입 제품의 경우 고유식별번호(EORI)
  -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유 텍스트 설명(상호, 전체 학명 등), 양(순중량·부피·수량)
  - ‘규제 품목’이 생산된 생산국 및 모든 토지의 위치 정보(소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위치 정보는 소를 사육한 모든 시설에 대해 기재). 제품이 서로 다른 토지에서 생산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한 경우 모든 토지의 위치 정보는 9(1)조 (d)항에 따름
  - 규정 4(8)조 및 (9)조에 따라 기존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선언서의 참조번호
  - ‘본 실사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운영자는 Regulation (EU) 2023/1115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제품이 규정 3조 (a)항 및 (b)항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만 발견되었음을 확인합니다.(By submitting this due diligence statement the operator confirms that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23/1115 was carried out and that no or only a negligible risk was found that the relevant products do not comply with Article 3, point (a) or (b), of that Regulation.)’ 와 같은 문구
  - 서명
-



## □ 2024년 말까지 산림 전용 위험도에 따라 국가 분류 예정

-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 및 제3국의 위험도를 ‘고위험·저위험·표준위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산림 전용 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할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이에 반해 이러한 위험 수준이 낮고 충분한 근거로 입증된 국가는 ‘저위험 국가’로 분류
  - 고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는 ‘표준위험 국가’에 해당
- 2023년 6월 29일자로 모든 국가는 ‘표준위험’으로 분류
  - 2024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국가의 위험 수준을 분류할 예정
  - 국가별 위험도는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비율 ▲‘규제 품목’과 관련한 농지의 확장 비율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생산 트렌드를 평가하여 분류
  - 고위험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규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 및 ‘운영자’ 중 최소 9%의 비율로 연간 검사를 실시
  - 표준위험은 3%, 저위험 1%로 위험도에 따라 검사 비율이 상이
  - 저위험 국가의 경우에도 공급망의 복잡성과 규정 우회 위험, 고위험 또는 표준위험 국가의 제품과 혼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검사 실시

## □ 각 회원국은 규정 이행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관할당국을 지정할 예정
  - 회원국은 규정에 명시된 검사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 이상의 관할당국을 지정
  - EU 집행위는 회원국별 관할당국 지정 상황을 온라인 상에 공개 및 업데이트할 방침
- 지정된 국가별 관할당국은 ‘운영자’ 및 ‘거래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연간 계획을 수립
  - 연간 계획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운영자’ 및 ‘거래자’에 대해 ▲실사 시스템(위험 평가 및 위험 완화 조치 포함)과 그 기능을 입증하는 문서 및 기록 조사 ▲EU 시장에 출시했거나 출시할 의도가 있는 특정 제품이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문서 및 기록 검토(필요 시 위험 완화 조치 및 실사 선언서 검토 포함)와 같은 검사 활동을 수행

-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정조치 검토 ▲정확한 종 또는 생산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 수단 활용 ▲지구 관측 데이터 등 산림 전용 여부 확인을 위한 기술적 및 과학적 수단 활용 ▲제3국 불시 점검(현장조사 포함) 등의 조치를 도입
- 관할당국은 검사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최소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동안의 규정 이행사항을 EU 집행위에 보고
  - EU 집행위에 보고되는 정보는 ▲위험 기준 및 이에 따른 검사 계획 ▲검사 결과 및 비준수 유형 ▲시장 출시 또는 수출된 규제 제품의 중량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벌 사항 등을 포함
-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서 보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매년 10월 30일 전까지 공개할 방침

## □ 규정 위반 시 ‘운영자’ 및 ‘거래자’ 처벌

- EU ‘운영자’ 및 ‘거래자’ 에 벌금·이익 몰수·공공 사업 참여 제한 등 징벌 부과
  - 규정 미준수 사실 확인 후 관할당국은 ‘운영자’ 또는 ‘거래자’에 ▲미준수 요건 시정 ▲해당 제품의 출시 금지 ▲회수 ▲자선 또는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거나 폐기 등의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하게 되며, ‘운영자’ 또는 ‘거래자’는 일정 기간 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환경 피해와 ‘규제 품목’ 및 제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 벌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
    - 법인의 경우 최대 벌금액은 벌금 부과 이전 회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의 4% 이상으로 산정
  - 또한 ▲제품 및 해당 제품으로 얻은 이익 몰수 ▲최대 12개월간 공공 조달 또는 입찰 참여 제한 및 보조금 수령 기회 박탈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의 경우 EU 시장 출시 금지 및 실사 간소화 불가 등의 불이익 부과

-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운영자’ 및 ‘거래자’ 의무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
  - 비중소기업 운영자 및 거래자에 대해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의 전환기간이 부여되어 2025년 6월 30일부터 적용

### 3. 해외 주요국 EUDR 대응 사례

- 규제 품목 생산국 및 수출국은 ‘보호주의 조치’로 간주, 크게 반발
  - 개발도상국 14개국은 EU 규정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비판(2022.11.)<sup>23)</sup>
    - 2022년 11월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CoA) 정례회의에서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태국,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 개발도상국 14개국을 대표해 인도네시아는 EU 규정에 대해 ‘본질적으로 징벌적’이고 ‘불공평’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로운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주장
  -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9개국은 자국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2023.07.)<sup>24)</sup>
    - 2023년 7월 7일 폐막한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인도, 러시아,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은 EU 규정이 “역내 농업 보호 및 수출 촉진을 우선시하는 조치이며, 녹색 수단으로 위장한 무역 장벽”이므로 WTO 비차별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 표명

23) Trade: Developing countries criticize EU’s deforestation regulation at WTO Published in SUNS #9697 dated 25 November 2022, Third World Network Berhad(2022.11.25.)

24) India raises concerns over EU’s carbon tax, deforestation regulation in WTO meeting, National Herald(2023.07.08.)

- 특히, 대표적인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EU 규정에 크게 반발
  - 양국은 EU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규제 완화를 호소(2023.05.)한 데 이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 장관 및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EU 규정을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2023.06.)<sup>25)</sup>
  - 양국은 EU 규정에 대해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고의적 행위”이며 EU로의 팜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반발하는 한편, 국가 위험도 평가 및 실사 시스템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sup>26)</sup>
- 이 외에도 캐나다는 EU 주재 캐나다 대사를 통해 우려를 표명(2022.11.)한 데 이어, ‘산림 황폐화’에 대한 자체 재정의를 통해 EU 법률 우회를 고려 중(2022.12.)<sup>27)</sup>

---

25) ‘EU is no rating agency’ : Indonesia, Malaysia hit out at deforestation rules’, BDPD(2023.07.05.)

26) Indonesian businesses await clarity on EU deforestation regulation, Asia News Network(2023.05.03)

27) Canada to redefine ‘forest degradation’ following EU import law, PEAK(2023.06.14.)

### Ⅲ. 시사점

#### 1. 한국산 수출 영향

□ 거대한 산림을 보유한 국가 또는 규제 품목을 생산·수출국이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파라과이 등 산림 면적이 크고 전용하는 국가에 영향 예상
  - 2020년 기준 러시아(20.1%), 브라질(12.2%), 캐나다(8.5%), 미국(7.6%), 중국(5.4%) 5개국이 전 세계 산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sup>28)</sup>
  -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산림 전용 비율이 높은 국가는 파라과이(40.0%), 미얀마(27.2%), 인도네시아(22.3%), 탄자니아(20.3%), 아르헨티나(18.8%) 순
  - 2022년 수목 손실량은 러시아(483만 ha), 브라질(331만 ha), 캐나다(230만 ha), 미국(220만 ha, 콩고 민주 공화국(122만 ha) 순<sup>29)</sup>
- (소) 생산 및 수출이 활발한 미국, 브라질, 인도 등 국가가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EU로 소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이므로 일부 국가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임

〈표 Ⅲ-1〉 전 세계 주요 소 생산국 및 수출국 현황

생산현황(2022)			수출현황(2022)		
국가명	생산규모(천 톤)		국가명	수출규모(천 톤)	
1	미국	12,890	1	브라질	2,898
2	브라질	10,350	2	미국	1,604
3	중국	7,180	3	인도	1,442
4	유럽연합	6,730	4	호주	1,239
5	인도	4,350	5	아르헨티나	823

\*출처: 미국 농무부(www.usda.gov)

- (코코아) 대표적인 코코아 생산·수출국인 코트디부아르, 가나,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국가는 산림 전용 의혹이 제기된 상태

28)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29) 글로벌 산림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www.globalforestwatch.org)

〈표 III-2〉 전 세계 주요 코코아 생산국 및 수출국 현황

생산현황(2021/2022)			수출현황(2021)		
국가명	생산규모(천 톤)		국가명	수출규모(백만 달러)	
1	코트디부아르	2,121	1	코트디부아르	3,629
2	가나	689	2	에콰도르	189
3	에콰도르	365	3	나이지리아	560
4	카메룬	295	4	네덜란드	409
5	나이지리아	280	5	말레이시아	280

\*출처: 국제코코아기구(www.icco.org),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 (커피) 규제 대상으로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등 전망
- 전 세계 커피 생산 및 수출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는 이들 국가는 對 EU 수출규모 역시 큰 편으로, 특히 브라질, 베트남은 산림 전용을 통한 생산국으로 지목되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해당

〈표 III-3〉 전 세계 주요 커피 생산국 및 수출국 현황

생산현황(2020)			수출현황(2021)		
국가명	생산규모(60kg Bag 천 개)		국가명	수출규모(백만 달러)	
1	브라질	69,000	1	브라질	5,833
2	베트남	29,000	2	스위스	3,601
3	콜롬비아	14,300	3	콜롬비아	3,189
4	인도네시아	12,400	4	독일	3,008
5	에티오피아	7,375	5	베트남	2,156

\*출처: 국제커피기구(www.ico.org),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 (팜유) EUDR 규정은 대표 생산·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정조준

〈표 III-4〉 전 세계 주요 팜유 생산국 및 수출국 현황

생산현황(2022/2023)			수출현황(2021)		
국가명	생산규모(천 톤)		국가명	수출규모(백만 달러)	
1	인도네시아	45,500	1	인도네시아	26,700
2	말레이시아	18,800	2	말레이시아	14,200
3	태국	3,260	3	네덜란드	1,200
4	콜롬비아	1,838	4	파푸아뉴기니	734
5	나이지리아	1,400	5	태국	714

\*출처: 미국 농무부(www.usda.gov),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 (대두) 막대한 물량을 생산 및 수출하는 브라질 및 미국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표 III-5〉 전 세계 주요 대두 생산국 및 수출국 현황

생산현황(2021/2022)			수출현황(2021/2022)		
국가명	생산규모(백만 톤)		국가명	수출규모(백만 톤)	
1	브라질	130	1	브라질	91
2	미국	122	2	미국	56
3	아르헨티나	44	3	캐나다	4.2
4	중국	16	4	파라과이	4.2
5	인도	12	5	아르헨티나	3.6

\*출처: 미국 농무부(www.usda.gov)

## □ EUDR 규정이 한국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2022년 유럽연합으로 농축수산물 약 6억 4,134만 달러(한화 약 8,116억 원) 수출, 전년 대비 6.6% 증가
  - 對EU 수출액은 전 세계 수출액의 6.5% 비중을 차지하며, 회원국 중 네덜란드(26.3%), 프랑스(17.7%), 독일(13.8%) 등 수출 비중이 큰 편

〈표 III-6〉 對EU 한국산 농축수산물 수출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2022)	전년비(21/22)	연평균(18/22)
전 세계	7,403,156	7,672,961	7,979,021	9,456,367	9,917,604	100.0	4.9	7.6
EU 27개국 합계	491,380	456,781	454,355	601,656	641,335	6.5 (100.0)	6.6	6.9
1	네덜란드	92,446	95,413	112,326	147,174	1.7 (26.3)	14.4	16.2
2	프랑스	77,249	71,066	56,558	97,549	1.1 (17.7)	16.4	10.1
3	독일	61,211	62,686	67,420	93,918	0.9 (13.9)	-5.1	9.8
4	이탈리아	55,320	55,168	49,789	70,489	0.7 (10.3)	-6.4	4.5
5	스페인	45,625	40,404	57,432	52,195	0.5 (8.1)	-0.5	3.3
6	폴란드	32,345	27,792	19,932	24,782	0.3 (4.2)	8.1	-4.6
7	덴마크	12,338	19,612	15,000	20,173	0.2 (3.6)	13.9	16.8
8	벨기에	13,360	15,994	9,210	19,469	0.2 (3.5)	15.0	13.8
9	스웨덴	8,584	10,443	13,187	14,036	0.1 (2.1)	-2.6	12.3
10	포르투갈	15,497	8,607	10,913	12,323	0.1 (2.0)	2.4	-5.0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검색일: 2023.07.12.)

- 對EU 주요 수출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27.4%), 참치(21.2%), 라면(10.0%) 등으로, EU 규제 대상과 연관성은 낮음

<표 III-7> 對EU 주요 농축수산물 수출품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022)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합계	491,380	456,781	454,355	601,656	641,335	100.0	6.6	6.9
1 혼합조제식료품	175,110	123,420	87,707	124,751	175,765	27.4	40.9	0.1
2 참치	102,050	96,142	103,324	138,509	136,046	21.2	-1.8	7.5
3 라면	22,127	25,557	39,668	51,748	64,377	10.0	24.4	30.6
4 김	21,370	21,875	22,651	37,002	30,490	4.8	-17.6	9.3
5 기타음료	33,131	31,885	28,844	27,463	25,664	4.0	-6.6	-6.2
6 대구	3,576	11,624	8,017	24,312	17,296	2.7	-28.9	48.3
7 기타파스타	4,962	6,776	6,076	8,010	11,069	1.7	38.2	22.2
8 김치	4,568	5,181	7,976	9,208	9,839	1.5	6.9	21.1
9 새송이버섯	10,017	10,766	10,084	10,843	8,731	1.4	-19.5	-3.4
10 기타조제식료품	3,666	4,851	5,351	8,473	8,698	1.4	2.7	24.1

\*주: 수출상위 품목 중 기타식물성점질물(AG Code 13439), 기타단세포미생물(AG Code 14219) 제외

\*출처: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검색일: 2023.07.12.)

## □ 하지만 향후 규정 구체화 및 변경에 유의 필요

- 2024년 말 국가별 위험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
  -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비율 ▲‘규제 품목’과 관련한 농지의 확장 비율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생산 트렌드에 근거하여 위험 수준이 ‘고위험·저위험·표준위험’ 중 한 가지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
  - 위험 수준별 검사 비율이 상이할 뿐, 모든 국가에 원칙적으로 검사 실시
  - 우리나라의 위험 수준 결정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EU 회원국 검사 및 기업 실사에 대비할 필요 있음
- 규정 논의 초기, 다양한 품목이 논의된 만큼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
  - 현재 지정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이들의 파생 제품 외에도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를 규제 대상으로 고려
  - 2년 후 규제 품목 및 파생제품을 추가 채택하여 규정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파급효과 및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



- 구체적인 실사 지침이 마련되기까지 꾸준한 관심 및 준비
  - ‘운영자’ 및 ‘거래자’를 위한 실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향후 EU 집행위 차원의 실사 지침 및 EU 기업 차원의 실사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꾸준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준비가 요구됨

## 2. 한국산 농식품 수출 대응방향

### 가. 유관기관 대응방향 및 과제

#### □ EUDR 규정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시사

- 기업의 친환경·사회적 책임·거버넌스 개선(ESG) 이행이 필수불가결한 생존 전략으로 부상
  - 유럽연합은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 전용 및 황폐화에 의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을 전용한 방식으로의 생산 금지를 촉구
  - 이와 더불어 산림의 용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토지 수탈, 원주민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폭력 등을 방지하고 국제 인권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
- 제품을 넘어 생산환경 및 공급에 주목하기 시작
  - 이전까지 품질과 기능 등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안전성, 원산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가 수출 가능성에 크게 작용
  - 앞으로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글로벌 무역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 차원을 넘어 생산환경의 적합성과 생산자의 책임 이행, 공급망의 투명성 및 추적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
- 실사를 통한 공급망 검증 규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
  - 2022년 유럽연합은 EU 기업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실사하는 내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발표한 바 있으며,

- EU 회원국인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실사법(LkSG)」 시행 중
-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로 인해 수출기업의 부담 및 수출장벽 발생

## □ 산림 전용 방지 규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기미를 보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영국, 미국, 중국 등에서는 불법적인 산림 전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논의 중
  - 2021년 11월, 영국은 불법적인 산림 전용에 대응하고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Environment Act)을 발의하여 공개 협의 실시<sup>30)</sup>
    -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등 대규모 산림 손실을 유발하는 상품 생산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실사를 통해 산림 전용 방지 요건 이행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
  - 미 하원에서도 2021년 산림 전용을 통한 소, 코코아, 팜유, 대두, 고무, 목재 펄프 생산 및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FOREST Act) 발의<sup>31)</sup>
    - 산림 전용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에 입증 책임 및 미충족 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함
  - 중국은 브라질과 ‘비프 얼라이언스(Beef Alliance)’를 체결, 중국으로 수출하는 브라질산 쇠고기의 산림 전용을 제한하는 민관 협력을 약속<sup>32)</sup>
- 향후 규정 이행상황과 회원국별 입법 동향 파악
  - 2024년 12월 30일부터 EU 기업 대상 규제가 시행되고 국가별 위험도 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후해 세부적인 지침 또는 기업 애로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더불어, 현행 규정은 실사 또는 기업 의무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기준만이 제시되어 있어, EU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확정 또는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규정 이행 단계에 따라 정해지는 세부 요건과 회원국별 규제를 파악하여 국내 기업 및 유관기관에 전파해야 함
  - 향후 구체적인 실사 지침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한 농식품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30) 영국 정부(www.gov.uk)

31)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www.congress.gov)

32) 열대림 연합(www.tropicalforestalliance.org)

- 불법적인 산림 훼손 근절 및 ESG 경영체계 확산 지원 필요
  - 농식품 생산 시 발생하는 불법 산림 훼손을 비롯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환경의 개선을 지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제품 개발 촉진 및 친환경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 지원,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
  - 이번 EUDR 규정 제정은 환경 보호 및 인권 존중에 초점을 맞춘 ESG 규제가 확대됨을 보여주므로, 기업의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EUDR 규정을 비롯하여 ESG 비관세장벽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ESG 요구사항 충족 및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됨
- 이와 동시에 수출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EU 규제 내용과 대상 품목 및 기업, 향후 추진일정 등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이해도를 향상
  - 실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전파하며,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준수 의무사항과 대응방안 등 구체적 정보를 별도 제공
  - 필요시 실사 대응을 위한 문의창구 또는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 나. 수출기업 대응방향 및 과제

- 공급업체에 대한 EU 기업의 요구가 강화되며 수출 애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 수출기업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EU 기업의 검증 및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규제 품목과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뿐만 아니라 원재료 공급업체, 잠재적 공급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EU 규정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실사 이행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
    - EU 기업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존 공급업체의

산림 전용 방지 요건 이행과 관련 정보 및 기록의 수집·유지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규정 이행 및 대응 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
- 수출기업 외 생산업체 또는 협력업체 형태로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 역시 간접적인 규제 영향이 예상되는 바, 이행 능력이 낮은 기업의 배제가 우려됨
- 뿐만 아니라, EU 기업의 실사 및 규정 이행방안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개별 기업 요구사항 충족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인력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 대상과 對EU 한국산 수출품목 간 연관성이 낮지만 규정 파악은 필요**

- 현행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7개 품목과 파생 제품은 한국산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1%에 못 미치는 非주력 품목으로, 한국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 의해 한국 수출기업이 영향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한국 농수산 수출기업에 대한 기회요인 및 도전요인 식별과 대응 필요**

○ **규정 내용이 구체화되고 보충 규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련 규정 정보 모니터링이 요구됨**

- 향후 법안 적용 범위(국가·기업·품목 등)와 현행 규정을 명확히하는 보충 규정 또는 지침이 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이번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 외에도 최근 유럽연합은환경 규제의 이행을 강제적 형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기업 경영목표에 환경 경영 요소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도입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는 등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영환경 전반에 환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반영
- 이 밖에도, 「산림 전용 방지 제품에 관한 규정」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사후적 대응에 머무르기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변화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EUDR 규정의 직접 적용 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참여에 따른 규정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함
  - 본 규정의 직접적 적용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EU 내 규정 적용 대상 기업 혹은 1차 벤더업체의 필요에 의해 동등한 수준의 규정 이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친환경 경영 역량을 내재화하고, 특히 원료생산·가공·유통·재활용(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친환경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사의 환경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소재 및 원료의 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 소지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협력사의 환경 관련 위험 점검이 수반되어야 함

〈표 III-8〉 EUDR 규정 대응방향

구분	대응방향
유관기관 차원	<p><b>1) 규제 동향 파악 및 국내 전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시행 단계별 확정 또는 변경 내용(기업 가이드라인, 국가별 위험도 결정)을 파악하고, 특히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 입법 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li> <li>- 규정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 전파</li> <li>- 향후 구체적인 실사 지침 제정 시 농식품 기업 맞춤형 가이드라인 수립</li> </ul> <p><b>2) ESG 경영체계 확산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식품 생산시스템 전환 등 기업의 ESG 경영체계 확립 지원</li> <li>- EU 외 글로벌 ESG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으로 확대</li> </ul> <p><b>3) 수출기업 지원정책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사전 준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관련 안내 및 교육을 통한 이해도 향상</li> <li>- 규정 적용대상 기업에 구체적 정보 별도 제공</li> <li>- 필요시 실사 대응 창구를 통해 적극적 지원</li> </ul>
수출기업 차원	<p><b>1) EU 규정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이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농식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EU 수입업체의 신규 공급업체 선정 시 규정 준수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li> <li>- 식품 공급망 전반으로 규정 이행 요구가 확대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분</li> <li>- 이에 따라, 규정 요구사항과 시행일정 등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하는 규정 관련 정보 모니터링하여 대비</li> </ul> <p><b>2) 환경 경영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에 환경 경영체계를 뿌리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li> <li>-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및 친환경 실천 역량 내재화, 환경 리스크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비</li> <li>- 자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벤더사 공동의 환경 리스크 관리 필요</li> </ul>

##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2	ITC Trademap(www.trademap.org)
3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4	유럽연합 집행위(https://environment.ec.europa.eu)
5	미국 농무부(www.usda.gov)
6	미국 의회 법률 도서관(www.congress.gov)
7	영국 정부(www.gov.uk)
8	국제코코아기구(www.icco.org)
9	국제커피기구(www.ico.org)
10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11	브라질 토지 피복 데이터 이니셔티브(https://brasil.mapbiomas.org)
12	보르네오 프로젝트(https://borneoproject.org)
13	글로벌 산림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www.globalforestwatch.org)
14	열대림 연합(www.tropicalforestalliance.org)
15	Study says unregulated cocoa production behind deforestation in Côte d'Ivoire, RFI(2023.04.10.)
16	Trade: Developing countries criticize EU's deforestation regulation at WTO Published in SUNS #9697 dated 25 November 2022, Third World Network Berhad(2022.11.25.)
17	India raises concerns over EU's carbon tax, deforestation regulation in WTO meeting, National Herald(2023.07.08.)
18	'EU is no rating agency' : Indonesia, Malaysia hit out at deforestation rules', BDPD(2023.07.05.)
19	Indonesian businesses await clarity on EU deforestation regulation, Asia News Network(2023.05.03)
20	Canada to redefine 'forest degradation' following EU import law, PEAK(2023.06.14.)
21	「EU Communication (2019) on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
2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MPTY Stepping up EU Action to Protect and Restore the World's Forests」
23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24	「EU Timber Regulation」
25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26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2013)」, European Parliament
27	「REGULATION (EU) No 995/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October 2010 laying down the obligations of operators who place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